## 변경대비표(집합투자규약)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증권 투자신탁2호[주식]

2. 시행일 : 2010년 8월 10일(화)

3. 주요 변경 내용 : 종류형 전환(C1, C-I 클래스 신설), 임의해지 관련 법개정사항 반영

## (1) 종류형 전환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3조(집합투자기	② 1~4 생략	② 1~4 생략
구의 종류 및 명	5. (신설)	5. 종류형
칭 등)	③ 신설	③ 종류 C1, C-I 신설

구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 C1	제한없음	해당사항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
			의 70%
종류 C-I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해당사항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
	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70%
	제11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구 분		지급비율			
		종류 C1	종류 C−I		
	가입자격 쥐)	제한없음	전문투자자 주2)		
	최초설정일	2005.01.07	설정전	_	_
수	선취판매수수료	_	_	_	_
수 료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
	운용보수	연 0.73%	연 0.73%	_	_
보	판매보수	연 1.50%	연 0.05%	_	_
수	신탁보수	연 0.04%	연 0.04%	_	_
	사무관리	연 0.03%	연 0.03%	_	_

## (2) 임의해지 관련 법개정사항 반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44조(집합투자기구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의 해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	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
	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신설)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
		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
		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동일)
	③ (생략)	③ (현행과 동일)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	④ <b>제1항제3호및제4호의</b> 규정에 의하여
	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	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
	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	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
	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